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26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오한아, 유 용, 이종환,
최영주, 황규복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조례상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승교육사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나. 명예보유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8호)
- 다. 전승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라. 전승공동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 마.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및 전승교육사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 바.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43조 신설)
- 사. 시장이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이하“시””를 “서울특별시(이하“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수교육조교”란”을 ““전승교육사”란”으로,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을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인정된”을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동체”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위원회 등”을 “위원회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유자의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전수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제21조제1항 전단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를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수교육조교의”를 “전승교육사의”로, “자를 전수교육조교”를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전수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전수교육조교가”를 “전승교육사가”로, “전수교육조교로”를

“전승교육사로”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을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를 “필요한 경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지급기준은”을 “지원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있으며,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중지한다”를 “중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지”를 “중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활용에뚜렷한”을 “활용에 뚜렷한”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4조(과태료) 시장은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 법 제5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무형문화재”란 <u>서울특별시</u> (이하“시”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사. (생략)</p> <p>2. ~ 4. (생략)</p> <p>5. “<u>전수교육조교</u>”란 제21조제1항에 따라 <u>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u> 사람을 말한다.</p> <p>6.·7. (생략)</p> <p>8. “<u>명예보유자</u>”란 보유자 중에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u>인정된</u> 사람을 말한다.</p> <p style="margin-top: 20px;"><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u>서울특별시(이하 “시”</u>-----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사.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전승교육사</u>”란 ----- ----- <u>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u> ----- -----.</p> <p>6.·7. (현행과 같음)</p> <p>8. ----- ----- <u>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u> <u>중에서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u> ----.</p> <p>9. “<u>전수교육</u>”이란 제34조에 따라 <u>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u>을 말</p>

<신 설>

제7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재의 보
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서
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2.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
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4. (생 략)
- ② ~ ⑦ (생 략)

제15조(수당 등) 위원회등에 출석
한 위원과 전문위원 및 외부전

한다.

10. “전승공동체”란 제19조제1
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
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
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
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
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
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
체를 말한다.

제7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
회의 설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전승교육사 -----

3. 4.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

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생략)

<신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

-----.

----- 위
위원회-----
-----.

제20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 제1항 또는 제2항-----

-----.

1. 무형문화재 -----

동 기간 및 실적

2.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
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④ (생략)

제21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시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③ 시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

2. 무형문화재 -----

3. 전수교육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1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을 실시하기 -----

--- 전승교육사-----

----- 전승교육사-----

② 전승교육사-----

--- 사람은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전승교육사의 -----

체로 하여금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수교육조교 대상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보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보유자등이 다음 각

-- 사람을 전승교육사 -----
-----.

④ -----
----- 전승교육사 -----
-----.

전승교육사-----

-----.

⑤ 전승교육사-----

-----.

제23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 전승교육사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 5. (생략)
6.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34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8.·9. (생략)
10.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

1. ----- 전승교육사-----
2. ~ 5. (현행과 같음)
6. -----
----- 전승교육사-----

7. ----- 전수교육-----

- 8.·9. (현행과 같음)
10. ----- 전승교육사가 -----

----- 전승교육사 -----
로 -----

②·③ (생략)

제28조(정기조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

2. ~ 5. (생략)

③ ~ ⑧ (생략)

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생략)

②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정기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전수교육사-----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수교육사는 해당 -----
-----.

1.·2. (현행과 같음)

③ -----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사-----
----- 필요한 경비 -----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신설>

-----.

-----.

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삭제>

3.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급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35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시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거나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6조(전수장학생)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⑥ 시장은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5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 전수교육학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전수장학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류의 기능·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

④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5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생략)

⑥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42조(표창) 시장은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활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신설>

-- 있다.

④ -----

-----.

중단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중단 -----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표창) -----

----- 활용에 뚜렷한 -----
-----.

제4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

<신 설>

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
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4조(과태료) 시장은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 법 제58조에 따
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
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기준에
따른다.